

학습 부정행위 처리에 관한 세칙

제정 2014. 9. 1

개정 2026. 3. 1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POSTECH 학생들의 학습윤리를 확보하고 학문적 진실성을 촉진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학습 부정행위의 범위) 다음의 행위는 학습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징계할 수 있다.

1. 시험(중간/기말고사, 퀴즈 및 수시시험 등)
 - 가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
 - 나.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행위
2. 과제 및 보고서
 - 가. 다른 학생이 작성한 과제나 보고서를 보여주거나 보고 베껴 쓰는 행위
 - 나. 실험 결과를 왜곡하거나 거짓결과를 만들어 보고서를 작성하는 행위
 - 다.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자료를 찾아 단순 짜깁기 하여 제출하는 행위
3. 출결
 - 가. 출석만 처리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
 - 나. 대리출석을 부탁하거나 대리출석을 해주는 행위
4. 타인의 저작물을 금전적인 대가를 받고 온라인,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경우
5. 위에 언급된 사항 외에 담당교수가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

제3조(징계절차) 제2조의 부정행위를 한 학생의 징계처리를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른다.

1. 담당교수는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입학학생처장에게 제출한다.
 - 가. 학습 부정행위 보고서 1부
 - 나. 과제나 시험지 등의 증거물 1부
2. 입학학생처장은 ‘학습 부정행위 보고서’를 접수하고 해당 학생의 지도교수 및 학과 학과장에게 통보 후, 해당 학생을 학생생활위원회에 회부한다. (개정: 2026.3.1.)
3. 학생생활위원회는 학생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, 학생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. 단, 학생이 진술기회를 포기한 경우에는,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학생의 진술 없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.

4. 징계는 학생생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, 총장의 승인을 거쳐 결정한다.

5. 해당 학생이 징계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,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징계의 구분) 징계는 근신, 유기정학, 무기정학, 제적으로 구분하며, 해당과제 및 시험 혹은 과목의 점수는 무효로 한다.

제5조(학점취소) ① 부정행위가 판명되었을 때는 취득한 학점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 졸업한 학생이 학점이 취소되어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졸업이 취소된다.

제6조(징계통보) 입학학생처장은 징계 사실을 담당교수, 지도교수, 학과장, 교무처장에게 통보한다. (개정: 2026.3.1.)

제7조(학적부 등재) 학습부정행위로 인한 징계 사실은 학적부에 기재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제정,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개정, 시행한다.